인천 청라 지구 청라 힐데스하임(A24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인터넷 청약 등의 시행 지시]2006.11.27)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내에 위치한 학교시설은 향후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 학교, 도로등의 시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함으로 사업주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 사 견본주택은 청약기간동안 청약희망자(2008. 10. 7. 0후/청약통장 사본 및 기타 청약가입자임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 지참)에게 선택의 기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합니다. 단, 견본주택 안에서는 일체의 사전예약 및 청약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www.cheong-na.kr)를 통해서도 사전관람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입 및 이용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청라 힐데스하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3249호(2008. 9. 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24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25층 10개동 총 1,2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65,602.6231㎡ 중 아파트 지분 63,782.6231㎡, 상가 지분 1,820.000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총 1,284세대 중 특별공급 576세대 포함)

(단위 : 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대지지분(㎡)	동	층별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0% 2008년 10월중	10% 2008년 11월24일	중도금 1 10% 2009년 2월23일	2 10% 2009년 6월23일	3 10% 2009년 10월23일	4 10% 2010년 2월23일	5 10% 2010년 6월23일	6 10% 2010년 10월22일	잔금 입주지정일 20% 2011년 7월중(예정)
민영주택	일반 / 인천광역시	22066-01	20080008310(1)	85.8110A	59.9435	25.8682	85.8117	39.3598	125.1715	51.1122	101, 103 106, 108	1층	16	85,428,747	135,471,253	220,90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44,180,000
												2층	16		145,671,253	231,10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46,220,000
												기준층	312		156,571,253	242,0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48,400,000
		22066-02	20080008310(2)	85.8110B	59.9435	25.8682	85.8117	39.3598	125.1715	51.1122	104, 105 109, 110	1층	16	85,428,747	135,471,253	220,90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22,090,000	44,180,000
												2층	16		145,671,253	231,10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23,110,000	46,220,000
												기준층	320		156,571,253	242,0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48,400,000
		22066-03	20080008310(3)	86.2063	59.8871	26.3192	86.2063	39.3228	125.5291	51.0642	101, 103 104, 105 106, 108 109, 110	1층	16	85,348,368	134,851,632	220,20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44,040,000
												2층	16		144,251,632	229,60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45,920,000
												기준층	316		155,151,632	240,500,000	24,050,000	24,050,000	24,050,000	24,050,000	24,050,000	24,050,000	24,050,000	48,100,000
		22066-04	20080008310(4)	84.2193	59.9007	24.3186	84.2193	39.3317	123.5510	51.0757	102, 107	1층	12	85,367,750	134,532,250	219,90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43,980,000
												2층	12		144,232,250	229,60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22,960,000	45,920,000
												기준층	216		154,732,250	240,100,000	24,010,000	24,010,000	24,010,000	24,010,000	24,010,000	24,010,000	24,010,000	48,02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해에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정해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선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2003.6.7)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금지기한 주택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적용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 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해 속한 분과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 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9.2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주택투기지역(2006.5.26)으로 지정되었으며, 주택법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당 사업자는 정부의 재출신 문제를 원화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9,38㎡대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0%385세대를 특별공급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2%25세대를 특별공급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기타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128세대를 특별공급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 사항
• 신청일시

구 분	대상 및 일시	비고
기타특별공급	2008. 10. 07 (화요일) 10:00 ~ 18:00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2008. 10. 07 (화요일) 10:00 ~ 18:00	
3자녀특별공급	1) 85점 이상 : 2008. 10. 07 (화요일) 10:00 ~ 18:00 2) 85점 미만 : 2008. 10. 08 (수요일) 10:00 ~ 14:00	
신혼부부특별공급	1) 혼인기간 3년 이내(순위) : 2008. 10. 07(화요일) 10:00 ~ 18:00 2)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이내(2순위) : 2008. 10. 08(수요일) 10:00 ~ 14:00	

※ 3자녀특별공급은 85점 이상 신청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85점 미만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기간 3년 이내인 1순위 신청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청약접수 장소 : 청라 힐데스하임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10. 8 (수요일) (17: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19조 제 6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 공급,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타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자 본인(대리인의 경우 1인) 이외에는 견본주택에 출입할 수 없음(추첨일에도 동일함)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청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 배정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2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30%/38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7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입양포함)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외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본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상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것을 말한다)이하인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2003.6.7)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금지기한 주택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적용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 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해 속한 분과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 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9.2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주택투기지역(2006.5.26)으로 지정되었으며, 주택법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당 사업자는 정부의 재출신 문제를 원화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9,38㎡대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0%385세대를 특별공급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2%25세대를 특별공급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기타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128세대를 특별공급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 사항
• 신청일시

구 분	대상 및 일시	비고
기타특별공급	2008. 10. 07 (화요일) 10:00 ~ 18:00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2008. 10. 07 (화요일) 10:00 ~ 18:00	
3자녀특별공급	1) 85점 이상 : 2008. 10. 07 (화요일) 10:00 ~ 18:00 2) 85점 미만 : 2008. 10. 08 (수요일) 10:00 ~ 14:00	
신혼부부특별공급	1) 혼인기간 3년 이내(순위) : 2008. 10. 07(화요일) 10:00 ~ 18:00 2)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이내2순위) : 2008. 10. 08(수요일) 10:00 ~ 14:00	

※ 3자녀특별공급은 85점 이상 신청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85점 미만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기간 3년 이내인 1순위 신청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청약접수 장소 : 청라 힐데스하임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10. 8 (수요일) (17: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19조 제 6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 공급,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타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자 본인(대리인의 경우 1인) 이외에는 견본주택에 출입할 수 없음(추첨일에도 동일함)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청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0. 2)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가능)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중액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 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8. 10. 2)"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주택에 1,2,3순위 청약 모두 공급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여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주택 청약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음.

■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순위	주 택 형	청 약 관 련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1순위	공 통	– 가점제 :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 존속세대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60세 미만 직계 존속세대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자별 대상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주택조합 및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해당 주택조합 및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 바람) –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아녀와 첩조)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가입자 포함)
	2순위	공 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청약자별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순위 및 제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인천광역시 서울, 경기	2008. 10. 9.(목요일)	– 접수장소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l2you.com) – 접수시간 → 평일: 08 : 30 ~ 18 : 00	–일시 : 2008. 10. 17 (금요일)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www.cheong-na.kr)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적모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인천광역시 서울, 경기	2008. 10. 10.(금요일)		
	3순위	인천광역시 서울, 경기	2008. 10. 13.(월요일)	– 접수장소 : 농협중앙회 지점 – 접수시간 : 평일 09 : 30 ~ 16 : 3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와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청약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판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의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수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수 창구청약 가능시간 은행영업일 (9:30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가능)

■ 청약관련 예금 납입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하여 가입금액청약자예에서 청약예금은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전용면적내지 확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한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지 신청 요건 –국민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청약자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세대주 인정기간에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일 등은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체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되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농협중앙회 지점 청구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 2순위(재예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재예 한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통해주민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장소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주택형	250만원	창구신청만 가능하, 단, 수도권지역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요망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에 해당면적 신청금액을 예치한 후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신청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은행 영업일2008. 10. 20. (월요일)부터 환불 가능, 평일 (9:30~16:3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농협중앙회 본·지점 (단, 지점계좌 농협중앙회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지동 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방 – 본인 ·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사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농협중앙회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견본주택에서 청약자의 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될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순위에서 가점제기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거주자격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 재선정함(단, 1순위자중 1주택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지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수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청약일반공급 세대수의 3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08. 10. 19일(요일)까지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2008. 10. 27일(월요일) 당사 견본주택내에 동·호수 배정 추첨 등 공급방법을 게시할 예정임 • 동·호수 배정 추첨일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 공급 이후 전여세대의 선착순 임의공급 방법은 2008. 10. 27일(월요일) 예비당첨자 공급방법 게시일에 당사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임.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세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사항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뭐등신 → 분양관 → 아파트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